



# 서울신용보증재단

수 신 재기지원부장

(경유)

## 제 목 서부재기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조치 협조 요청

서부재기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이 발견되어 알려드리오니, 조치 후 결과를 아래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제도개선사항

가.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의무화 (재기지원부)

- 집행권원을 취득했음에도 기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이 불분명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.
- 위와 같은 상황 지속 방지 및 대외감사 지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사안에 대한 업무지도를 요청함.

나. 실효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대한 처리방법 마련 (재기지원부)

- 재단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무배당 종결될 경우 실효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폐기 또는 보관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영업점별로 관리방법이 상이함.
-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함.

다. 신용회복위원회 직권 유예조치 공지 (재기지원부)

- 코로나19 특례조치로 신용회복지원 채무자가 변제유예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별도 채권자 동의절차 없이 직권으로 6개월 변제유예 조치를 시행중임.
- 명확한 채권관리를 위해 해당 제도 시행내용 공지 요망

### 2. 회신기한 및 방법 : **2021.4.16.(금)까지 전자문서로 회신**

※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람. 끝.

감사실장



★검사역

권대일

실장

02/18  
신용호

협조자

시행            감사실-141            ( 2021.02.18. ) 접수            (            )  
우 (04130)   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, 5층(공덕동)           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  
전화 02-2174-5056    /전송 02-3278-8111            / [mirueta@seoulshinbo.co.kr](mailto:mirueta@seoulshinbo.co.kr)            / 공개